##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7090

제안연월일: 2024. 12.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2024. 8. 1.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(2024. 11. 14.)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.

- 나. 2024. 11. 18. 「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2024. 10. 24. 서영석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04894)을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.
- 다.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(2024. 12. 3.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- 라.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(2024. 12. 5.) 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인공유방,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예방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.

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상사례실마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환류 체계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장기적으로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하고 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제2항 신설).
-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실사용 정보를 제출받아 수집·분석·평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제3항 신설).

다.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관리 및 실사용 정보의 수집·분석·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"을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장기추적조사대상"으로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(이하 "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"라 한다)를 별도 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사항은"을 "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사용 정보의 수집·분석·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"으로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 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과 자료 외에 장기추 적조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술 및 이상사 례 등의 정보(이하 "실사용 정보"라 한다)를 제출받아 이를 수집·분 석 · 평가할 수 있다.

제44조제2항 전단 중 "업무를"을 "업무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 조사대상 의료기기의 관리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실사용 정보의 수집 ·분석·평가 등의 업무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)	제29조(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
	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
	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
	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
	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
	기(이하 "장기추적조사대상 의
	료기기"라 한다)를 별도로 정하
	여 관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적
의료기기의 지정기준 관리기	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장기추적
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	<u> 조사대상</u>
총리령으로 정한다.	<u>.</u>
제30조(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)	제30조(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
	조제2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
	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제
	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과 자
	료 외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
	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
	되는 시술 및 이상사례 등의 정

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<u>사항은</u> 총리 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 략)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·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보(이하 "실사용 정보"라 한다)
를 제출받아 이를 수집 • 분석 •
평가할 수 있다.
<u>4</u>
사항과 제 <u>3</u> 항
에 따른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
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제44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
(현행과 같음)
②
<u>업무와 제29조제</u>
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대상
의료기기의 관리 및 제30조제3
항에 따른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
분석·평가 등의 업무를

<u>.</u>